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년월 : 2023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놀이기구 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민간 유휴공간을 발굴·연계하여 조성하는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2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시설규모	비고
1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성북동점 (하늘이음교회)	성북구 성북로4길 21 (성북동)	· 2층 일부 · 연면적 : 261.05㎡	무상사용기간 : 10년
2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정릉3동점 (벤엘교회)	성북구 솔샘로17길 8 (정릉3동)	· 1층 일부 · 연면적 : 213㎡	

나. 위·수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예정)

다. 위탁사무내용

-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운영
-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놀이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 부재 시 긴급 놀이돌봄 서비스 지원

라. 수탁기관 선정 :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정) 제9조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
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
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
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
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정)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기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기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 놀이기구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라 놀이기구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놀이기구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관리주체로서 놀이기구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은 놀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